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1. 실내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시설장비 : 없음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시설장비 : 없음 	<<건설기술진흥법>>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3. 습식·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시설장비 : 없음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라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뽐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 [기능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4. 석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업무내용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p>《국가기술자격법》</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p> <p>【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방수</p> <p>【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p> <p>【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p>
5. 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업무내용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p>《국가기술자격법》</p> <p>【기능장】 건축일반시공</p> <p>【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p> <p>【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p> <p>【기능사보】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p>
6. 비계·구조물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p>《국가기술자격법》</p> <p>【기술사】 용접</p> <p>【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p> <p>【기사】 용접</p> <p>【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p> <p>【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p> <p>【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p>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7. 금속구조물 ·창호·온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p> <p>【기술사】 금속재료,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p> <p>【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전기,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p>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금속구조물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온실설치공사 :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p>【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프레스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종기, 판금제관, 기계설계, 금속재료, 전기, 전기공사, 토목제도,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창호제작(금속재), 온수온돌</p> <p>【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금형, 기계가공조립, 기종기운전,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기,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온수온돌, 금속도장</p> <p>【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콘크리트,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온수온돌, 구들온돌, 금속도장</p>
8.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p> <p>【기술사】 금속재료</p> <p>【기능장】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판금공사 :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싱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 :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p>【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금속재료</p> <p>【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종기, 기계가공조립, 프레스금형, 판금제관, 금속재료,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방수</p> <p>【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종기운전, 기계가공조립, 금형,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p> <p>【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다듬질, 프레스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비계, 조적, 건축목공, 방수, 금속도장</p>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9. 철근·콘크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훈격법》</p> <p>【기술사】 용접</p> <p>【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용접</p>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p>【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방수</p> <p>【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p> <p>【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p>
10. 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훈격법》</p> <p>【기술사】 금속재료, 가스</p> <p>【기능장】 에너지관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건축일반시공, 가스</p> <p>【기사】 메카트로닉스, 금속재료, 전기공사, 에너지관리, 가스</p>
업무내용	·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p>【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에너지관리,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에너지관리, 가스</p> <p>【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가스</p> <p>【기능사보】 디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p>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11. 상·하수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p>《국가기술자격법》</p> <p>【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p> <p>【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p> <p>【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p> <p>【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p>
12. 보링· 그라우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p> <p>【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p> <p>【기능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p> <p>【기능사보】 굴착, 시추</p> <p>※ 토목분야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 가능</p>
업무내용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화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	
13. 철도·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조합출자 • 사무실 • 기술인력 : 5명 이상 (우측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분야 초급 이상 2명(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중 1명 포함) (2) 기계분야 초급 이상 1명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전기용접·가스용접 또는 특수용접기능사 중 1명 포함) •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이상) (2) 트롤리 4대이상(적재 하중 10톤이상) (3) 타이렘퍼 2대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이상 (5) 양로기 1대이상 	<p>《건설기술진흥법》</p> <p>【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p> <p>【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p> <p>【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p> <p>【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p> <p>【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p>
업무내용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14.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2 억원 이상, 개인 4 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조합출자 • 사무실 • 기술인력 : 3 명 이상 (우측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분야 초급 이상 1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p> <p>【기능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p> <p>【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p>
업무내용	<p>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p>	
15. 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 명 이상 (우측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기계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조합출자 •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 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 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 (개정 07.12.28) 	<p>《건설기술진흥법》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 【기능장】 용접, 위험물 【기사】 항로표지 【산업기사】 기중기, 준설선, 위험물, 철근, 굴착, 지하수,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철근, 화약취급, 시추, 잠수, 항로표지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철근, 굴착, 시추, 잠수</p>
업무내용	<p>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p>	
16. 조경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 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조합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재배용토지 보유는 2006.1.1일부터 폐지됨 	<p>《건설기술진흥법》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 종자,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p>
업무내용	<p>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p>	<p>【기능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p>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17. 조경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 기술인력 : 2명 이상 (우측 참조) • 사무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 【조경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업무내용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외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p>【기 사】 용접, 콘크리트</p> <p>【산업기사】 용접,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목공예</p> <p>【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 석공예</p> <p>【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석공, 조적, 미장, 건축목공, 거푸집, 조경, 목공예</p>
18. 철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2억원 이상, 개인 4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조합출자 • 사무실 • 기술인력 : 4명 이상 (우측 참조) (1) 토목·건축·기계분야 중 초급 이상 2명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 시설장비 : 없음 	<p>《건설기술진흥법》 【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 【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p>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기타 각종 철구조물 공사 	<p>【기 사】 금속재료</p> <p>【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p> <p>【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p> <p>【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p>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19. 철강재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7 억원 이상, 개인 14 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조합출자 • 사무실 • 기술인력 : 5명 이상 (우측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분야 초급 이상 2명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2) 건축분야 초급 이상 1명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3) 기계분야 초급 이상 2명 (용접분야 초급 이상 1명 포함) •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이상) (2) 현도장(길이 50m 이상, 폭 15m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20. 삭도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2 억원 이상, 개인 4 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조합출자 • 사무실 • 기술인력 : 5 명 이상 (우측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분야 초급 이상 1명 (2) 기계분야 초급 이상 1명 (3)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 1명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2명 •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중기(50톤이상) (2) 전기용접기(30KVA이상) (3) 동력원치 (4) 발전기 	<p>《건설기술진흥법》</p> <p>【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안전관리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국가기술자격법》</p> <p>【기술사】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p> <p>【기능장】 용접, 전기</p> <p>【기사】 전기, 전기공사</p> <p>【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전기, 전기공사</p>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p>【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전기</p> <p>【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p>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21. 준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본 금 : 법인 7 억원 이상, 개인 14 억원 이상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조합출자 •사 무 실 •기술인력 : 5 명 이상 (우측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토목분야 초급 이상 3명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2) 기계분야 초급 이상 2명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이상 기술자 1명 포함) •시설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설선 2종이상[펌프식준설선(2천마력이상) · 그레브식준설선(6㎡이상) · 닛파식준설선(5㎡이상) · 바켓식준설선(2천마력이상) 중] (2) 예선(200마력이상) (3) 양카바지(100마력이상) 	<p>《건설기술진흥법》</p> <p>【기계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업무내용	·하천 ·항만 등의 물길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22. 승강기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본 금 : 법인 또는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 : 2 명 이상 (우측 참조) •사 무 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5~60% 이상 출자 •시설장비 : 없음 	<p>《국가기술자격법》</p> <p>【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p> <p>【기 능 정】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p> <p>【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p> <p>【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p>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	<p>【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p> <p>【기능사보】 다등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자기기, 전자기기</p>

업종명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기술인력 인정 범위
29. 시설물유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 : 법인 또는 개인 2 억원 이상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기 자본금의 20~25% 이상 조합출자 • 사무실 • 기술인력 : 4 명 이상 (우측 참조) • 시설장비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키메라, 균열폭측정현미경,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초음파에 의한 측정 장비,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p>《건설기술진흥법》</p> <p>【건축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p>【토목분야】 초급, 중급, 고급, 특급</p>
업무내용	<p>·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